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2010년 사업계획(초안)

수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참여단체

제출일시: 2010년 5월 06일(목) 오전 10시

문석작성: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김태정(범국민교육연대/010-4724-953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준비모임 구성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0년 사업계획(초안)’을 제출합니다

## 1) ‘지역 토론회’

예시)

###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 때 : 2010년 0월 00일
- 곳 : 00지역
- 주요 내용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의의/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그 현황과 쟁점 등
- 주최: 토론회에 참여하는 00지역 교육 시민 사회단체

□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게 부활된 0교사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인 강제는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학교시장화정책과 이를 통한 경쟁교육심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들이 확대되고,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성적에 줄세우기의 강요는 일선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운동은 물론 비롯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협소하게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당위성만을 강변 혹은 읍소해서는 안되며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속에서 조례제정운동의 의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점에서 토론회의 내용 또한 전체 교육문제 혹은 주요 현안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토론회는 5월부터 시작하여 상반기 중에 16개 광역 시도 중 절반정도를 목표로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의 경주해야 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라는 단일한 의제와 주체만으로 조직이 어려울 경우 여타의 단위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조직하는 방안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 2)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 시민추대방식의 교육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약속하더라도 이 일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이들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 나아가 이미 확인하였듯이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교육 진영이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실천단위가 결성되어야 합니다. 또 준비모임 또한 서명운동을 전면화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며 본조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명운동은 우선 6월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1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목표 서명운동 및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 3)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그 의의와 함께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틀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입시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례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은 학교안의 학생에 대한 인권으로 그 공간적인 범위가 제약됩니다. 학생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이나 학교밖의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은 조례를 둘러싼 협의의 논의와 실천에 제약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에 취약합니다.

□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할 때 비록 준비모임 직접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청소년 인권개선이라는 큰 틀로의 담론의 확장을 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의 주요한 교육주체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등이 한데 모여 청소년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시기는 6월 이후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일정하게 진행된 후 시점 예를 들어 9월 초 중순에 학술대회 형식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준비모임 차원의 기획팀 혹은 워크샵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는 제 교육단체와의 협의속에서 보다 풍부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 4) 기타

- 본 조직 출범 기자회견
-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글 쓰기 (5-6월)
-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및 발표
- 각종 퍼포먼스 - 입시국본과 결합하는 자전거행진 (8월)
- 4회 입시폐제대학평준화 공동행동과의 결합방안 (10월)